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44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년 02월 16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년 08월 02일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힘이나는커피생활]

정보공개서

따름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따름인-([#힘이나는커피생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3, 601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2266-4963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70-4905-496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2266-496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따름인	#힘이나는커피생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3, 601(일부)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0.11.01	김희민	02-2266-4963	070-4905-4963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66-27-01135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대표)	김희민	#힘이나는 커피생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3, 601(일부)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희민	02-2266-4963	070-495-496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최근 3년)

당사는 바로 전 3년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힘이나는커피생활	
상 호	#힘이나는커피생활()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9866)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를 하여 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1,736	3,501	108,235	499,734	30,505	30,505
2022년	187,301	5,215	182,086	754,458	53,318	53,351
2023년	205,658	8,244	197,413	981,605	67,477	67,32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김희민	대표	2020.12월~현재	대표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0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힘이나는커피생활]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힘이나는 커피생활 TAKE OUT CAFE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2021.06.14	4020200058882	전진영	2031.06.14
			4017398660000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상표권은 등록 완료되기 전에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당사의 상표(특허) 범위는 해당 점포 소재지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II. 가맹본부의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사업 현황

1. [#힘이나는커피생활] 최초가맹점영업이 시작한 날 : 2021.03.01

2. [#힘이나는 커피생활]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따름인	#힘이나는커피생활	김희민	2021.03.01.~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양로 1193, 601(일부)호

3. [#힘이나는 커피생활] 업종

영업표지	업종	
#힘이나는커피생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음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힘이나는 커피생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0	11	11	0	10	10	0
서울	8	8	0	11	11	0	10	10	0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8	0	0	0	8
2022	8	3	0	0	0	11
2023	11	0	0	1	0	10

*계약종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를 뜻함

*계약해지 : 가맹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 등의 특수한 사항으로 발생되어 본부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명의변경 :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6. [#힘이나는커피생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247,171	23,855	471,121	78,568	119,697	9,525	
서울	10	247,171	23,855	471,121	78,568	119,697	9,525	
부산	0	해당없음						
대구	0	해당없음						
인천	0	해당없음						
광주	0	해당없음						
대전	0	해당없음						
울산	0	해당없음						
세종	0	해당없음						
경기	0	해당없음						
강원	0	해당없음						
충북	0	해당없음						
충남	0	해당없음						
전북	0	해당없음						
전남	0	해당없음						
경북	0	해당없음						
경남	0	해당없음						
제주	0	해당없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사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매출관련 자료는 2023년도 6개월 이상 영업한 11개 점포(6개월이상 영업하였으나 폐점한 점포 포함)의 자료입니다.

8.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개)	평균 영업기간(일)
2023	10	818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733	 (비공	-	
광고	-	 (비공개)	733	 (비공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성수동지점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	02-463-6911

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위 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2) 가맹금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가맹금 이체동의서)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으로 계약체결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온라인이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지역 및 위치, 규모, 건물의 상태 및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입비등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가입비, 개점전교육비, Open지도/지원비)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포면적/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

1)최초 가입비등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1,65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소요 -본부의 대체출점에 대한 기회비용	-개점 전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고, 즉시 소멸됩니다.
개점전교육비	1,650				
Open지도 /지원비	2,200				
가입비등 합계	5,500				

2)당사의 로열티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3)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채무 및 위약금을 우선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계약 이행보증금	2,5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본부 대여물품에 대한 정산하여 잔액 상환(파손/기한 점 가맹계약 종료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등의 매입대금과 로열티 1회분 지급액 합계액의 3배 이내

4)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가맹금(가입비등 + 계약이행보증금)은 8,000,000원 (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 천원)
총합계	8,000
가입비등	5,500
계약이행보증금	2,500

*(가입비등 = 가입비 + 개점전교육비 + Open지도/지원비)

*가맹계약체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완납하여야 가맹계약이 성립함.

5)기타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권장평수 10평]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공사	가맹본부 등 (자체공사가능)	17,380	1,738	업체와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주방기기/가물	가맹본부 등	28,600	2,860		설치 전 계약취소 상품 미공급시	설치 설비/집기에 따라 상이
테이블등 (가구)	가맹본부 등	4,620	-			점포 면적에 따라 상이
간판/싸인물	가맹본부 등	6,380	-			간판 면적에 따라 상이
POS/CCTV	가맹본부 등	1,320	132			설치 장비에 따라 상이
초도물품비용	가맹본부 등	3,850	-	물품 공급전	상품 미공급시	점포 면적에 따라 상이
집기 비품	가맹본부 등	2,640	264			
총계		64,790	6,479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설, 소방설비, 화장실, 키오스크,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파사드 포함), 주방순간온수기, 냉동창고,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등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비용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점포의 경우 출장비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자체공사 가능하며, 이 경우 ①도면비 33㎡당 275천원(VAT포함) 추가 부담하셔야 하며, ②감리비는 33㎡당 330천원(VAT포함)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도면비는 10평이하라도 최소 2,750천원(VAT포함)부담하셔야 합니다.)

※가맹지망자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당사의 매뉴얼 규정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제공받는 인테리어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유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아래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시공하셔야 합니다.

- | |
|--|
| ①3년 이상의 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최근 2년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필수) |
| ②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업체(공사가능 금액이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및 면허증사본 제출 필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항 및 시행령 제8조 ①항 및 별표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 금액이 15,000천원 이상의 공사 시에는
관련자격 2명 이상이 필요함) |
| ③공사중의 사고로부터 “을”과 “갑”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Brand Image”의 악화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보험관련증명서 제출) |
| ④공사항목별 세부견적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비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업체 |
| ⑤공사 후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사본 제출 가능한 업체 |

6)가맹점 입지 선정 주제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을 통한 알선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입지가 당사의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당사의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①창업설명회 참석→②가맹희망자 입지확인 후 담당자 전달→③지도/사진&현장방문 승인여부 결정/통보→④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승인여부의 사내기준- 1)기존 [#힘이나는커피생활]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2)점포의 전용면적 적합성 3)점포의 위치 : 1층 우선 4)가시성 및 접근성 5)주변 동종업종 분포 6)기대수익에 대한 실현가능성

7)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만 25세 이상
종업원(홀/주방)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입비등을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8)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따름인	매출액의 1.32% (공급품 개별 사입시, 3.96%임)	매월 20일, 익월 5일 (월 2회납부)			·2023-2024년도 : 없음 ·2025-2026년도 : 0.825% 적용 (단, 개별 사입시 감면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약하여 금액 결정	별도 약정			
판촉분담금						
교육훈련비	TAKE OUT	실비지급	교육 실시 2주전			연간 2회 이내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약하여 금액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약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따름인 등	업체와 별도계약	별도 약정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 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따름인 등 (개별시공가능)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 약정			자체공사시, 인테리어 규정에 따라야 하며, 도면비용, 감리비 추가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등	월 27,500원	업체와 협의			
지연이자	따름인	연12%	즉시지급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물류비	따름인	해당없음 (제주도등 도서 산간지역 별도부담)	즉시지급			긴급발주시 점주부담

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가맹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위생사고나 메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 보관/재고관리의 적절성 등에 점검 및 보완에 대해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하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1)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 평소 매출액의 1.65%(vat포함)에 대한 로열티는 영업과정에서 지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다)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1)귀하가 운영하는 [#힘이나는커피생활] 브랜드의 운영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법인’은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관련 비용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가맹본부에서는 양수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이나 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본부의 승인에 의해 영업권을 양도 받는 자는 ‘개점전교육비, Open지도/지원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다시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그 금액은 양도되는 시기의 ‘개점전교육비, Open지도/지원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금액은 물가변동이나 가맹본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계약 종료후의 조치 사항

: 계약 종료 후에도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영업중단 및 간판 철거, 이미지 및 상표, 상호, 표장 디자인, 싸인물, 로고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2)[#힘이나는커피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경영노하우, 조리방법 및 레서피와 같은 사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3)매뉴얼, 교육자료, 설비 등과 같은 사업본부의 자산은 즉시 반납/확인 받아야 합니다.

(4)가맹계약서 및 제공된 정보공개서 반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힘이나는커피생활]의 이미지 혹은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이미지, 디자인, 로고, 영업형태, 시설이나 외관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6)본부로부터 인테리어나 간판의 개선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지 3년이내에 폐점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7)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점포’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확인증(상호변경등록을 하고 상호변경등록 확인서)과 함께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계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8)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계약 종료 전 일정한 범위(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냉장, 냉동등 비상온 공급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해주지 않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힘이나는커피생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힘이나는커피생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계				-	-

2) 당사가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2023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구분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당사	당사외	가맹점	그외
국내판매	0%	0%	99.5%	0.5%
계	0%		100%	

2) 2023년도 말 기준 국내판매상품중 온·오프라인 전용상품 판매의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오프라인 전용상품	온/오프라인 공용상품	계
0%	100%	0%	100%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메뉴를 무단으로 삭제해서도 안됩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커피/콜드브루류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2024.06월 기준
라떼류			
라떼(non-coffee)류			
스무디&프라페류			
에이드&주스류			
차(tea)류			
스페셜&시그니처류			
디저트&스낵류			

※귀하가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맛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메뉴를 삭제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및 알콜포함 음료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고객 및 경쟁업체 종사자, 유사업체 종사자	커피원두, 음료 베이스, 파우더 및 소스류, 시럽류, 컵 등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되는 메뉴에 대해 표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별첨자료	별첨자료	가맹점사업자 대상 단체톡방(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2024.06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표준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는 판매가격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커피 및 디저트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중저가 커피전문점	#힘이나는커피생활	해당없음

당사가 [#힘이나는커피생활]의 가맹계약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영업지역의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 내 인구수(200)명당 1점포로 한다. (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 -단, (2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ex:명동, 종로, 강남, 동성로, 충장로 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왕복3차선 이상 건너편 미보호, 철도/하천(구거포함) 건너편 미보호, 특수건물 미보호 (동일브랜드 출점 가능)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 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 별지의 영업지역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계약 갱신 시 합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또는 별도 협의 후 합의 → 재조정 및 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회신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만약, 가맹본부의 변경(안)에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합의함.

4)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힘이나는커피생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6)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7)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가맹계약의 기간

: [#힘이나는커피생활] 브랜드의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계약월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로열티율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로열티율 인상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이나 연장일 90일 이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2)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계약 갱신 거절(종료)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27조 4)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27조 4)항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27조 4)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27조 4)항
[#힘이나는커피생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27조 4)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27조 4)항
최초의 가맹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 27조 4)항

4)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합의해약	개점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하면 계약기간의 종료 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상호 위약금을 청구치 못함)	제28조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후 미시정시 해지가능	①개점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29조 2)항, 제10조
	②점포(위치/층/면적 포함)의 확보, 인테리어, 시설/설비/간판/전산설비/보안설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공사업체/규격 준수와 공급/시공업체와의 대금 지급일정 준수, 도면비용/감리비용 지급, 인허가/관련 자격의 취득/유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준수하거나 미실행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 부터 3개월내 개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29조 2)항, 제9조 3)항 4)항 5)항 6)항 7)항 9)항 11)항, 제12조
	③브랜드의 인테리어/간판/메뉴/조리방법/표준가격/상차림/유니폼착용/서비스기준 등에 대한 통일성 미준수 혹은 그로 인한 브랜드나 가맹본부 명성의 침해, 메뉴에 대한 도입/관리/삭제/표준가격에 대한 기준 미준수, 미허용메뉴의 취급, 메뉴/식자재/소모품/용역에 대한 적절한 품질 기준의 미준수,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에 대한 미준수, 설비/집기/비품과 외관, 운송수단에 대한 기준 미준수, 메뉴/식자재/용역/영업활동과 관련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부와 사전 미합의, 메뉴/식자재/용역의 구입과 판매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과 관련된 자료에 유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점포"의 운영/영업 상황 파악을 위한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 임직원의 "점포" 출입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CCTV/POS나 회계자료의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포의 위치/층/면적을 변경한 경우, "점포"를 확보하거나 유지에 실패한 경우, 제3자에게 점포를 점유케 하거나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양도한 경우, 계약기간중 동일 혹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직원도 동일한 의무), 영업표지나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본부에게 이러한 침해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원 포함), 점주연수에 점주 자신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연수나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파견과 관련된 비용의 미지급혹은유통기간 위반시 발생하는 현장교육비의 미지급, 상권보호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광고/홍보등, 배달주문에 대한 광고/홍보 포함) 혹은 그로 인한 다른 점주의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 배상(보상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 문서에 의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인터뷰나 기고, SNS활동, 홈페이지 운영, 광고 혹은 홍보를 한 경우, 메뉴에 대한 레서피(식재료의 성분 및 중량/비율, 조리 방법 및 순서 포함)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차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메뉴나 식재료의 적정 보관온도,보관방법이나 해동 방법에 대한 미준수, 식품의 원산지나 중량과 그 표시 의무에 대한 미준수, 그외 식품의 청결이나 위생과 관련된 법률의 미준수, 가맹본부, 직원, 거래처, 건물주나 그 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급기한 미준수, 약정한 기한내 로열티를 미지급하는 경우, 매출관련 자료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공 하는 경우, 점주나 종업원이 가맹본부나 협력업체의 임직원과의 동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혹은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미성년자에게 주류의 판매나 제공 행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행정기관의 방문, 지도/지원/단속 등의 결과 사항에 대해 본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전파하지 않는 경우("BrandImage"보호 차원), 종업원의 근로와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규칙의 미준수혹은 관련된 관련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이나 방역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메뉴의 개발/개선과 관련된 점포에서 분담할 투자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75% 이상의 점포가 찬성한 전점포광고나 홍보, 판촉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연속 2일 이상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주6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월26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오전 11시에 개점하지 않은 경우, 오후 7시 전에 영업을 중단한 경우, 양수도/명의변경/상속에 대한 규정(본부에 60일 전에 사전 통보및 승인)을 위반한 경우, 청결한 점포환경의 조성/유지 및 유지의무, 점포환경 개선시 본부지원을 받았으나 3년 이내 계약의 종료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포환경 개선시 인테리어/설비/집기 등의 시설규정 미준수 혹은 도면비용이나 감리비용 미지급, 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본부가 손해(손실 포함)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 점주나 직원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본부나 다른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의 경우.	제29조 2)항, 제11조, 제14조 1)항 4)항 6)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1)항 8)항 9)항, 제25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2)항

④제시/통보의 의무(영업표지나 특허권 등에 대해 제3자로 부터 소를 제기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우, 수리/리뉴얼등으로 일시적인 휴점이 필요한 경우, 입점한 쇼핑몰의 휴무일 변경으로 영업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방문/지도/점검이 있었던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파산/압류/가압류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에 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거주와 관련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유/무선 전화번호나 메일id가 변경된 경우, 그 외 “점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에 통보)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29조 2)항, 제25조
⑤당사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가 있었을 경우	제29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다음페이지의 표)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1)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②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등 부과처분 다.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점사업자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추가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지도에 표시하 여준 지역내 추가 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2)항
②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출점전략이나 ‘점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입비등이나 로열티를 감 액할 수 있다.	제9조1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본부는 계약 수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수정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수정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1)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 =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제도)

2)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일단,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승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 자에게 통지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승인 여부는 해당 양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당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만약 승인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양도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기준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준에 적 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자간 계약 체결 예정일 최소 5주전) →당사 담당팀 면담/검토(20일 소요) →승인여부 통지 →양수도 신규계약 체결/양도자 합의 해약 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점주/종업원)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 02-464-4963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과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 로 양수인은 **가입비를 제외한 개점전교육비, Open지도/지원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수인과 당사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와 양도인과는 합의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약한 것으 로 간주하여 당사에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3)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외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가맹점운영권의 제3자에 대한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당사검토→담당부서 검토 →승인여부통지→가맹계약체결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교육비)
대리행사	불가	-	-	-
업무위탁	불가	-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귀하가 [#힘이나는커피생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국내 전 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커피 및 디저트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중저가 커피전문점	해당사항 없음	경업시, 2,000만원 위약금 및 가맹해지 함

2)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브랜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해 최소 시간 및 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귀하의 점포가 개점 후 매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최소 영업 시간	최소 영업 일수	비고
개점 11시 ~ 폐점 19시	주 6일(월 26일) 이상	문의:02-464-49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여부	대체 가능인력	비고
필수 운영인원 (점주 포함 2명이상)	직접 근무(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 이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귀하가 영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매장운영을 위해서는 주방과 홀에 각각 권장 종업원수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하가 영업장에 직접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는 음식업에 경험이 있는 책임자를 채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연간 3회 내외	본부 가맹사업팀	
각종설비 관리	→관리/감독항목 확인			
원부자재 관리	→점포점검 List 작성			
서비스 및 레시피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 /개선방향 구두 협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점 및 눈높이의 일치를 위해 <별첨> 점포점검List와 같은 Check Lis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전체 점포에 대한 메뉴관련 혹은 친절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분기에는 본부 담당자가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50%	50%	계획공고→비용 부담범위 공고→진행	전 점포 75%이상의 동의 필요
	가맹점모집	전액부담	-		포스터 부착 협조
판촉행사	전 점포 행사	50%	50%	행사별 별도 협의 (QSC미달점포 참여 거부될 수 있음)	전 점포 75%이상의 동의 필요
	개별점 행사	없음	사업자전액부담 원칙		본사 사전승인
할인카드/멤버십 /모바일상품권	제휴행사	-진행별 별도 협의			별도공지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체인 전체의 판촉 등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점포의 판촉으로 인해 주변 점포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주변 점포에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체인 전체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 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하고 축적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면, 가맹본부의 'Brand'의 시스템/레서피/조리방법/접객방법/매뉴얼/가맹계약서 등의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사전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열람/대여/복사 등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점포'내에서 근무/교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점포'의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한 것을 위반 혹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①무단영업일 30일까지 : 계약종료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로열티 금액 X 무단영업일수 X 150%

②무단영업일 31~60일 : 계약종료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로열티 금액 X 무단영업일수 X 200%

③무단영업일 60일 초과시 : 계약종료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로열티 금액 X 무단영업일수 X 300%

(일평균 로열티가 10천원(VAT별도)이고 무단영업일수가 65일인 경우의 손해배상금

= 10천원(VAT별도)X 65일 X 300%

= 1,950천원(VAT별도)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의 ②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산출식을 적용함)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감면규정 적용하지 않음.

2)경업금지위반이나 영업기술이나 비밀을 누설시 위약금은 각 2,000만원으로 한다.

12. 가맹본부의 가맹점 CCTV(스마트캠)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CTV(스마트캠)자료 열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CCTV(스마트캠)자료 열람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고객클레임 발생 시 근거자료 활용

·가맹점 위생상태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요청시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단, 가맹본부는 매출자료 열람 목적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나 "점포"의 직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인터넷 문의 접수 -간단한 정보제공 및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D-48	-
창업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업전반 설명 -필요시 개별상담 진행 (구체적인 지역/점포가 있는 경우)	D-43	-
물건 소싱	-부동산 방문/물건 소싱 -물건 방문/상권확인 등	D-43~28	-
물건접수/방문	-가맹희망자가 제시하는 물건 접수/사전분석 -물건방문 및 당사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 -승인여부 내부 결정	D-43~28	-
최종 협의	-최종 협의 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3~28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계약 체결	D-28	-
가입비등 외 예치	-국민은행에 가입비등/계약이행보증금 예치	D-28	-
종업원 모집/채용	-적정 종업원수 협의 -종업원 모집/채용	D-25~7	-
점포 실측/설계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 산출	D-28~22	-
인허가 문의/취득	-인허가 기관 방문/협의 -인허가 취득	D-28~22	-
도면 협의 등	-도면 협의 및 승인	D-22	-
인테리어 등 공사	-공사 실시 (인테리어, 주방 설비/집기, 전산설비 등)	D-21~2 (20일)	-
교육 실시	-점포 이론/실습교육 실시	D-6~2 (5일)	-
개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11쪽에 기재된 가입비등(가입비, 개점전교육비, Open지도/지원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jifau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5년: 최근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경과한 시점)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공사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90일내,30% /2차:1차지급일로부터 60일내,30% /3차:2차지급일로부터 60일내,40%)
협의를절차	-가맹본부의 권유(서면발송) → 가맹점 동의(서면회신) → 환경개선 시행 -가맹점 신청 → 가맹본부 검토 및 승인(서면승인) → 환경개선 시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비고	.인테리어 비용: 벽체/바닥/천정과 관련된 공사, 건물내 전기/급배수, 간판틀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비용만을 의미함. .간판교체 비용:간판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함. (즉, 덕트/테이블/의자 관련 비용, 철거비, 화장실/전기인입/전기승압/가스인입/가스설치와 관련된 비용, 냉/난방기의 구입/설치비, 싸인물관련 비용, 주방 시설/집기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2. 판촉진행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에서 가능한 범위내 경영자문에 응함)
절차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지도내용, 기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설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1주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지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기재하여 요청 → 검토 후 3주일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부담 (로열티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비고	문의 : 가맹본부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하셔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힘이나는커피생활] 브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개점전교육)	-점포 경영의 개요 -검수, 메뉴의 조리방법 -종업원 채용, 교육 및 관리 -POS조작 및接客방법 등	집합교육 이론/실습	개점전 교육이수/통과	필수교육
보수교육 (전 점포)	-신메뉴 교육 -친절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필수교육
보수교육 (클레임발생/ 운영상태미달 점포)	-조리방법 재교육 -친절, 위생 재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본부 요구 시 즉시	
현장교육 /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기한, 상미기간 경과품 발견/시정조치	가맹점 현장점검 /교육	본부 요구 시 즉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힘이나는커피생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교육 (개점전교육)	40시간 (8시간×5일)	-당사 교육장/점포 <별첨>의 개점전교육비 적용	필수교육 (가맹비등에 포함)
보수교육 (전 점포)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필수교육
보수교육 (클레임발생/ 운용미달 점포)	클레임의 종류 및 해당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현장 교육/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시 유통기한, 상미기간 경과품 발견 시 10~30분	1백만원 (VAT별도)	-점포현장 입점/조사시, 유통기한, 상미기간 경과품 발견시에만

3. 교육훈련의 주체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고 합격해야 점포 개점이 가능합니다. 불합격시, 가맹계약서 제9조5)항에 따라 점포 개점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전 점포/클레임 대응)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서 제 16조 15)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2023년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023년도 말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2023년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2023년도 말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2023년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2023년도 말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사업 담당부서 (가맹본부 : 070-8777-496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별첨>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TAKE OUT CAFE

#힘이나는 커피생활

<별첨>판매가격 및 가격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원, vat포함)	가격통보방법	비고
아메리카노(H)	1,800	가맹점 사업자 대상 단체특방(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2024.06월 기준
아메리카노(L)	2,300		
콜아메리카노	2,800		
헤이즐넛/바닐라아메리카노	2,800		
힘이나커피	3,300		
콜드브루	3,500		
콜드브루 라떼	4,000		
크림 콜드브루	4,500		
카페라떼	3,200		
헤이즐넛/바닐라라떼	3,500		
카푸치노	3,200		
카라멜마끼아또	3,800		
카페모카	4,000		
연유라떼	4,000		
민트카페모카	4,500		
큐브라떼	4,200		
티라미수라떼	4,200		
초코라떼/녹차라떼	3,500		
오곡라떼	3,600		
밀크티라떼	3,800		
고구마라떼	4,000		
토피넛라떼	4,000		
딸기라떼/민트초코라떼	3,800		
오레오초코라떼	4,200		
달고나우유	4,000		
흑당버블티	4,500		
흑당버블밀크티/흑당버블그린티	4,800		
폼프라페(플레인/딸기/오곡/바나나)	4,000		
바나나프라페	4,200		
프라페(쿠키/초코/녹차/커피)	4,200		
민트초코프라페	4,300		
요거트스무디(플레인/딸기/망고/블루베리)	4,200		
체리콕	3,300		
복숭아아이스티	3,300		
에이드(레몬/자몽/청포도)	3,700		
힘이나에이드	4,800		
모히또(라임/자몽/청포도)	4,000		
딸기주스(딸기바나나/오곡/초코)	4,200		
제주한라봉감귤주스	4,900		
녹차/캐모마일/페퍼민트	2,700		
얼그레이/루이보스	2,700		
유자차/레몬차/자몽차	3,300		
허니브레드	4,800		
크로크무슈	3,800		
프레즐	2,300		
베이글(플레인/블루베리)	2,000		
베이글칩(갈릭/허니)	2,700		
츄러스	1,800		
아이스크림 츄러스	3,800		
소프트아이스크림(우유/딸기/초코/흑임자)	2,900		

<별첨>

● 재무제표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TAKE OUT CAFE
#힘이나는 커피생활